

주일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일한국문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6.04.26(일) 24:00** 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주일한국문화원

1. 채용 개요

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예정일	비고
일반직	1명	○ 한국문화 소개 및 홍보를 위한 행사 기획 /운영 및 행정업무 - 현지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SNS 콘텐츠 제작 등 - 글로벌 K존 기획 및 관리, 한국 문화 및 제품홍보 등	2026년 6월(예정)	

2. 근로계약 및 보수·복리후생 조건

구분		내용
근로계약 형태		기간제근로자(1년 계약) / 근로기간 1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검토
수습기간		수습기간(3개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근무요일(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보수 및 복리 후생 등	기본급	월 JPY 261,800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여금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월 기본급의 100%(연 2회 분할지급)
	주거보조비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 지급 상한 내에서 지급 - 상한액 : 월 161,370엔
	퇴직금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
	비고	한국 4대 보험 가입 ※ 급여에서 공제되며,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는 전액/반액 면제

※ 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3. 기타 지원사항(지원 대상자에 한함)

구분	내용
부임항공료	행정직원 본인에 한하여 항공표(편도) 실소요액 지급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귀임 항공표(편도) 실소요액 지급

※ 그 외 사항은 채용예정자에게 별도 통보

4.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등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병역법」 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제70조제1항 또는 3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 의무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한 자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5. 직무 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 요건

구분	내 용
직무 필수 요건	○한국어 및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현지 체류 및 문화원 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능통자 ○현지 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로 채용 즉시 운전 가능한 자
직무 우대 요건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경력자

○ 가산점(서류전형에만 적용)

구분	내 용
장애인	○ 가산점 (서류전형 만점의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산점 (서류전형 만점의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6. 채용 응시방법

○ 접수처/문의처: recruit@koreanculture.jp

※ 접수기간 마감일 **2026.04.26.(일)24:00(일본 현지 시간 기준)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시 이메일 제목은 “**주일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지원(지원자 성명)**”으로만 표기

○ 제출서류(**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

- 채용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국·일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학력/경력/언어능력 증빙서류(해당시) : 업무경력, 어학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 성별, 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

7. 채용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 평가 방법 : 관련분야 근무경력(50점), 언어능력(30점), 자기소개서(20점) 등을 중심으로 서면 심사 예정
- 동점자 경우 관련 경력 보유자 우선 선발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 제출된 경력증명서 내용만 경력으로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은 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면접 일시 통보는 개별 통지(2026.5.8 예정)

○ 2차 심사(면접전형)

- 평가 방법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0점) 언어능력(30점),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행정직원으로서의 직업의식(10점), 기본역량 (10점) 등 적격성 종합 평가 실시

- 동점자 발생 시 재 면접 실시 예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 최고점수자를 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 합격자 명단은 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2026.5.20 예정)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채용 승인
- 1·2차 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서류 제출 안내(신원조사 등)
-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

8. 유의사항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원조사 등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통지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문화원에 제출해야 함
- 채용이 확정된 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의 연장·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끝.